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2. 기준일 :2022.03.01

3. 시행일 : 2022.03.17

4. 정정사유

- ① 부책임용역 변경(조남석→윤수로) 및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용역 변경(조남석→윤수로)
- ②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 ③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
-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<집합투자규약>

해당사항 없음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[요약 정보]	투자비용 -	투자비용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[요약 정보]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[요약 정보]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연락처 : 02-3770-1300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층 연락처 : 02-2118-0500
부책임용역 변경,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부책임용역전문인력 : 조남석 모투자신탁 부책임용역전문인력 : 조남석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부책임용역전문인력 : 윤수로 모투자신탁 부책임용역전문인력 : 윤수로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, -	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

개정사항 반영	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동일종목투자</p> <p>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총액의 40%까지 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<추가> ○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비중(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	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동일종목투자</p> <p>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총액의 40%까지 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○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비중(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 : 555,600원	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 : 424,800원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 변동성 : 4.99%	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수익률 변동성 : 4.86%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	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

경	2길 32 (02-3770-1300 www.wooriam.kr)-	108 파크원1 37층 (02-2118-0500 www.wooriam.kr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 영	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 탁업자) < 신설 >	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 탁업자) @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 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
채권평가회 사 사명변경	제4부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	제4부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)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 경에 따른 업 데이트	투자비용 -	투자비용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기준일자 변 경에 따른 업 데이트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집합투자업 자 주소 변 경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